

『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시민운동장, 보조경기장 및 금오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신설과 주경기장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하여 체육시설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기준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(제2조)
-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, 보조경기장 및 금오테니스장 신축에 따른 사용료 조정(안 제10조 및 별표1, 별표2, 별표4)
-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관련 서식 신설 및 변경(별지 제2호의2서식에서 별지 제2호의4서식, 별지 제3호 서식)

4. 참고사항

-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6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시민운동장, 보조경기장, 금오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조정하고,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이용시간, 체육시설 및 부속 시설 사용료, 사용기준 등을 명시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은

- 시민운동장, 보조경기장 사용료를 별표1, 금오테니스장 사용료를 별표2, 부속시설 사용료를 별표4에 신설하고,
- 시설 사용에 따른 별지 제2호의 2서식, 별지 제2호의 3서식, 별지 제2호의 4서식, 별지 제3호 서식을 신설하였음.
- 안 제 23조 위탁의 대상을 법인을 추가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시민 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료 인상 및 신설에 대해 구미시 물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적정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,
- 신규 시설인 만큼 가급적 체육이외의 행사에 대한 임대는 자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